기획재정부 **보 도 자 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보도 일시	2022. 1. 4.(화) 10:00	배포 일시	2022. 1. 4.(화) 09:00
담당 부서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책임자	과장 류중재 (044-215-5250)
		담당자	사무관 이재우 (dlwodn0416@korea.kr)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22.1.4.(화)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22.1.4.**(화) 개최된 제1차 **국무회의**에서 '21.12.9.(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21.12.30.)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 공포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금일(1.4.)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은 **1.11.**(화)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적용**될 예정입니다.

※ **국유재산특례**란 「**국유재산법**」의 일반 기준을 벗어나 **개별 법률**에서 부여한 **국유재산 사용**에 관한 **특례**를 의미함
① 사용료: (국유재산법) 5% → (특례) 무상사용 등 사용료 감면
② 허가기간: (국유재산법) 5년 이내 → (특례) 5년 초과
③ 소유권 이전: (국유재산법) 유상 매각 → (특례) 무상 양여

□ 이번 개정은 **국유재산 특례**의 ①**기본원칙 확립**, ②**일몰제 도입**, ③**불요불급한 특례 정비** 등을 통해 **국유재산특례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으로 **목적의 공익성, 대상·요건의 구체성, 방법의 최적성, 기한의 한시성** 등 **4가지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 **특례**를 **신설·운용**함에 있어 **해당 원칙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특례 운영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모든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존속기한 연장**을 **결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현재는 특례를 규정한 개별 근거법률에 존속기한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218개의 특례 규정 중 6개만 준수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은 실정

- 이에 따라 향후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존치 필요성이 낮은 **특례**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③ 이미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존치 필요성이 낮은 국유재산특례 규정**은 이번 개정에서 우선적으로 **7건**을 **폐지***하였으며,

* ❶무역거래기반조성법에 따른 사용료 감면, ❷지능형 로봇 개발법에 따른 사용료 감면, ❸태권도 진흥법에 따른 사용료 감면, ❹포뮬러원 지원법에 따른 사용료 감면, ❺국제대회 지원법에 따른 사용료 감면 및 양여, ❻평창동계올림픽법에 따른 사용료 감면·양여(2건)

④ 한편, **코로나19 등 재해 발생시 철도시설 점용료 감면,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10건***의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 ❶철도시설 점용료 감면, 지자체 철도유휴부지 사용료 감면(2건), ❷수도부지에 대한 지자체 사용료 감면, ❸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사용료 감면, ❹국토안전관리원 사용료 감면, ❺용도폐지 된 해양경찰장비 개도국 무상 양여, ❻국립소방병원 사용료 감면, ❼농업생산기반시설 공공목적 사용 시 사용료 감면, ❽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련 사용료 감면, ❾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사용료 감면

□ 이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정비**를 통해 **국유재산특례**가 **효율적**으로 **관리·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별 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도로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어촌·어항법」, 「항만법」 또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점용허가,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하는 경우	제3조(적용 범위) ----------. 1. (현행과 같음) 2. ----------「어촌·어항법」 또는 「항만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② (생 략) <신 설>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요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국유재산특례의 목적과 적용대상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2.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나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특례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서 적절할 것

	3.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것 4. 국유재산특례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운용될 것
제5조의2(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간 설정) ①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의 존속기간을 해당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① ----------존속기한을 별표----------.
<신 설>	②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다른 법률 규정은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은 국유재산특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장기 사용허가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장기 사용허가등----------.
제6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①·② (생 략)	제6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변경의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1. 국유재산특례의 목적이 공익에 부합할 것	<삭 제>
2. 국유재산특례의 요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삭 제>
3.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	<삭 제>

출자,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적절할 것	
4.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간이 그 목적에 비추어 적절할 것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5조 각 호----------.
제7조(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경제적 비용, 운용성과 및 운용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평가)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점검·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
<신 설>	1. 국유재산특례의 지출액 규모, 운용 절차 등 운용 실태에 대한 점검
<신 설>	2.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목표달성도, 경제적 비용, 운용성과 등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의 결과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특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점검·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특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요청
<신 설>	2.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③ 제2항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방안, 국유재산특례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1호----------.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2호와 관련한 조사·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의뢰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138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7138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① 별표 제172호, 제216호부터 제220호까지 및 제222호	<삭 제>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별표 제22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이 법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제4조 관련)

연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1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사용료등의 감면	2024. 12. 31.
2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3	「결핵예방법」 제2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사용허가등	2029. 12. 31.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사용허가등	2025. 12. 31.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8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9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3 및 제40조의4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사용허가등	2029. 12. 31.
10	「공연법」 제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2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사용허가등 및 양여	2029. 12. 31.

	조		
14	「광주과학기술원법」 제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2025. 12. 31.
1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7	「국가철도공단법」 제2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8	「국립공원공단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5. 12. 31.
19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2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8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21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22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2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2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6	사용료등의 감면	2025. 12. 31.
2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5. 12. 31.
26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27	「국방과학연구소법」 제21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2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2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3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3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사용허가등	2029. 12. 31.
32	「국토안전관리원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33	「국회사무처법」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34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양여	2029. 12. 31.
35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3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관한 규제특례법」 제54조		
3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3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39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4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4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양여	2029. 12. 31.
4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43	「노인복지법」 제5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44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양여	2029. 12. 31.
45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46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47	「농촌진흥법」 제3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4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49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50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5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52	「도로교통법」 제13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5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5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	양여	2029. 12. 31.
55	「도시개발법」 제69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사용허가등	2029. 12. 31.
5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5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사용허가등	2029. 12. 31.
57	「도시철도법」 제11조	양여	2029. 12. 31.
58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사용허가등 및 양여	2029. 12. 31.
59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60	「독립기념관법」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61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6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양여	2029. 12. 31.
63	「모자보건법」 제2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6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6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66	「문학진흥법」 제13조	양여	2029. 12. 31.
67	「문화재보호법」 제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6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69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0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70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1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7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72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7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74	「발명진흥법」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75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76	「방위사업법」 제32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77	「방위사업법」 제4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78	「법률구조법」 제2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7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4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사용허가등	2029. 12. 31.
8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사용허가등	2029. 12. 31.
8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2조	양여	2029. 12. 31.
8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5. 12. 31.
83	「사립학교법」 제35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8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9조		
85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8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8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8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8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5. 12. 31.
9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 및 제46조의7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5. 12. 31.
9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8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5. 12. 31.
9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8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9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9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95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9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9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9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99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00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01	「선원법」 제11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02	「선원법」 제14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03	법률 제10710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양여	2029. 12. 31.
10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조		
10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06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5. 12. 31.
107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5. 12. 31.
108	「수도법」 제77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09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10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11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8조	양여	2029. 12. 31.
11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1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의2	양여	2029. 12. 31.
116	「아동복지법」 제62조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으로 한정한다)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1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20	「암관리법」 제3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2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2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2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2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25	「영유아보육법」 제39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26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2	양여	2029. 12. 31.
127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28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2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30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31	「울산과학기술원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32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33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3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3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3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3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3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3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4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41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4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43	「전시산업발전법」 제26조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44	「전쟁기념사업회법」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4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4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47	「정부법무공단법」 제21조의3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4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가등 및 양여	2029. 12. 31.
14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5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5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5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5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5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5. 12. 31.
154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5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56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57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58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18조	양여	2029. 12. 31.
15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60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7. 12. 31.
16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62	「철도사업법」 제4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63	「철도사업법」 제46조의2	장기 사용허가등	2035. 12. 31.

16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6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66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67	「청소년 기본법」 제5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68	「청소년 기본법」 제5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69	「초지법」 제1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70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7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7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4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가등 및 양여	2029. 12. 31.
17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74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75	「하수도법」 제6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7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양여	2029. 12. 31.
177	「한국고전번역원법」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78	「한국공항공사법」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79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80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2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81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8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82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8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84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8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4조	양여	2029. 12. 31.
186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87	「한국법학원 육성법」 제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88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8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90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5. 12. 31.
19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92	「한국산업은행법」 제32조	양여	2029. 12. 31.
193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94	「한국연구재단법」 제1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9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96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9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98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99	「한국철도공사법」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200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201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202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203	법률 제16160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부칙 제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204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205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206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2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5. 12. 31.
207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208	「항로표지법」 제3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209	「항로표지법」 제4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210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1조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211	「항만공사법」 제2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212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양여	2029. 12. 31.
213	「해양환경관리법」 제10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21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장기 사용허가등 및	2025. 12. 31.

	법률」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사용료등의 감면	
21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2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사용허가등	2029. 12. 31.